

의안번호	2209015
의 퇴 인	권영세 의원
회 답 일	2025. 4. 16.
추계번호	25F1562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배우자 상속분 전액 공제 등 －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3조제1항제1호(상속세 과세가액)	○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합산되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에서 배우자 증여분은 제외
2	안 제18조의2제1항(기업상속공제)	○ 기업상속재산 가운데 배우자 상속분 제외
3	안 제19조제1항(배우자 상속공제)	○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삭제
4	안 제20조제1항제4호(그 밖의 인적공제)	○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 제외
5	안 제22조제1항(금융재산상속공제)	○ 금융재산 상속공제 산정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제외
6	안 제23조제1항(재해손실 공제)	○ 재해손실 공제 적용 상속재산 가운데 배우자 상속분 제외
7	안 제30조제1항(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)	○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 제외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9조제1항제1호(배우자 상속공제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8조의2제1항(기업상속공제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19조제1항(배우자상속공제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	안 제20조제1항 제4호(그 밖의 인적공제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5	안 제22조제1항 (금융재산 상속공제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6	안 제23조제1항 (재해손실 공제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7	안 제30조제1항 (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전액 공제할 경우 상속세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개정안에 따른 배우자 상속분 전액 공제와 연계된 합산대상 증여재산, 가업 상속공제, 그 밖의 인적공제, 금융재산 상속공제, 재해손실공제,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우자를 제외함에 따라 세수 변화 발생

□ 그러나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 전액 공제 등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배우자의 재산상속 여부, 상속재산 가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○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음
 - 단,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

현행 배우자 상속공제 = ① 또는 ② 가운데 적은 금액

① =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

② = [(상속재산 + 사전증여재산 -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) × 배우자 법정상속분]
 - 10년 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
 단. 30억원 한도

* 최저 공제(5억원): 배우자 상속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

-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근 3년간 결정현황을 살펴보면, 2021년 4조9,570억원, 2023년 7조 9,908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19조 1,519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발생하였으며, 이는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원 한도 기준으로 한도 초과분 등에 대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가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국세청 자료 등 부재

[표 1] 최근 3년간 배우자 상속공제 결정 현황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	합계
배우자상속 공제금액	49,570	62,041	79,908	191,519

자료 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, 각 연도.

- 또한 합산대상 증여재산, 가업상속공제, 그 밖의 인적공제, 금융재산 상속공제, 재해손실공제 및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우자를 제외함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배우자의 증여합산 재산가액, 가업상속·금융재산·재해손실·단기 재상속 등의 배우자 상속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 등 부재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